

**Q**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교육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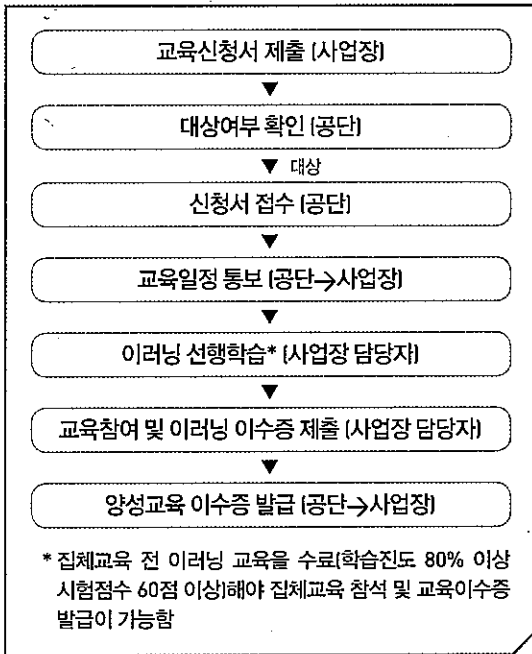
집합교육: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교육 ▶ 교육신청 ▶ 관할 구역 선택 ▶ 교육 과정 선택 ▶ 사업장 정보 입력 ▶ 확인

이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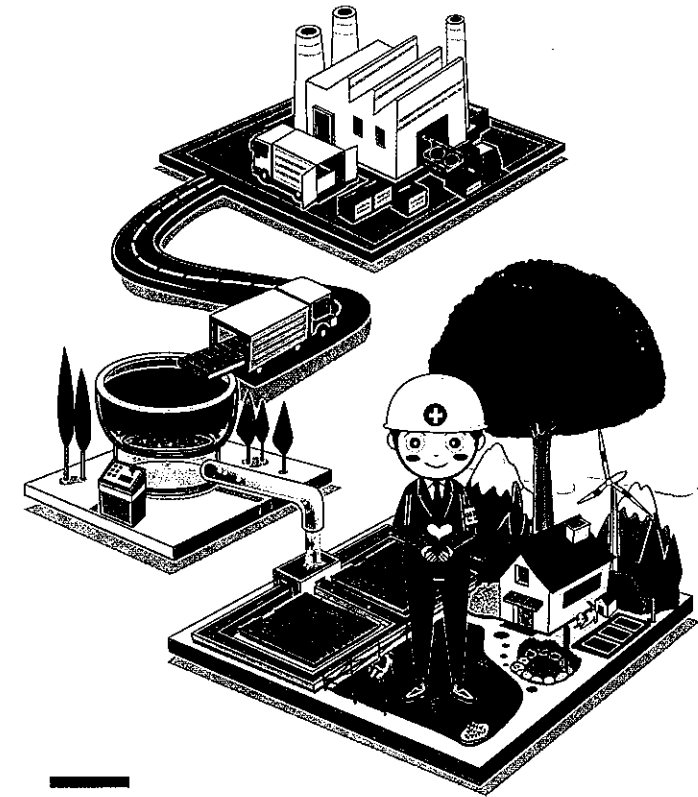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 접속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러닝교육) ▶ 회원가입 ▶ 로그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검색 ▶ 수강신청 ▶ 교육이수 ▶ 이수증 출력 및 집체교육시 제출

교육 절차



권역	기관명	관할구역	전화	팩스
서울 인천 경기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6711.2914	02.6711.2920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성북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동대문구·도봉구·강북구·중랑구·노원구	02.3783.8360	02.3783.8359
	중부지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86	032.581.8380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평택시·오산시·용인시·안성시·화성시	031.259.7178	031.259.7170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031.828.1945	031.878.1541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시흥시·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031.481.7552	031.414.3165
부산 울산 경남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양평군	031.785.3359	031.785.3333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032.680.6551	032.681.6513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64	051.520.0569
대구 경북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052.226.0563	052.260.6997
	경남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055.269.0516	055.269.0590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5.371.7512	053.421.8625
광주 전남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청도군·군위군	053.609.0573	053.421.862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053.650.6813	053.650.6820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054.271.2012	054.271.2019
전북	경북지사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054.478.8063	054.453.0108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함평군	062.949.8711	062.944.8277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061.689.4912	061.689.4990
대전 충청	전남지사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진흥군·진도군·신안군	061.288.8715	061.288.8778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원주군·진안군·무주군	063.240.8523	063.240.8519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고창군	063.460.3613	063.460.3650
강원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보령시·계룡시·서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태안군·홍성군	042.620.5673	042.633.1938
	충북지사	충청북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	043.230.7119	043.236.0371
제주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	041.570.3406	041.579.8906
	강원지사	강원도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815.1058	033.243.8315
제주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평창군	033.820.2552	033.820.2591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25	064.797.7518

# 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길라잡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18년 9월 1일 부터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안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Q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 •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Q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 A**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 Q 선임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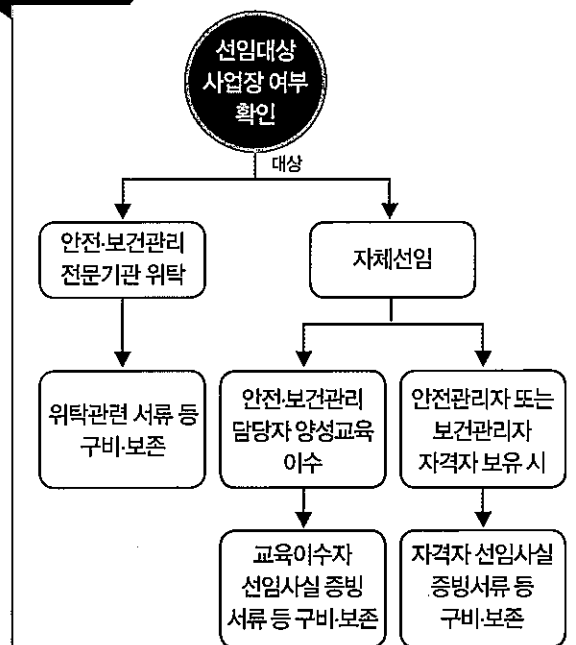
- A** • 안전보건공단(안)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 Q 선임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보존(3년간)하여야 합니다.

#### 선임 절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안내

### Q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A**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 양성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교육 :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 30~50인 이상 사업장은 제도 시행일(18. 9. 1) 이후 매 2년 되는 날 기준

### Q 언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A** •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하려는 자  
\* 사업장당 2명 이상 신청 가능, 단 `17년 시범교육 이수자는 제외  
\*\* `19년 선임대상인 20~30인 사업장의 경우 `18년 교육 이수 시 `19년 선임 가능
- 교육시간 및 방법 : 16시간  
(이러닝 선행학습 5시간 + 실습·체험 교육 11시간)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10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3시간), 업종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3시간) 등
- 준비물 : 본인 여부를 증명할 사진이 있는 신분증 및 이러닝 이수증 지참
- 수료 기준 : 집체교육 전 이러닝 교육을 수료\*하고 집체 교육과정(11시간)의 90% 이상 출석
- \* 이러닝 교육은 학습진도 80% 이상 시 시험가능하며, 시험점수 60점 이상 득점해야 수료

※ 양성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 (1회 한함)